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 지침

제정 2002.09.26

개정 2004.05.10

개정 2009.02.04

개정 2013.11.20

개정 2017.01.04

개정 2018.07.15

개정 2025.0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91조 제4항제1호에 의거하여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자산운용이 투자회사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법 제184조에 의거 의결권 행사를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한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 이하 "회사"라 함)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관 주의)

회사는 고객과 수익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행사기준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수익자 및 투자기업의 주주로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1.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자 및 투자회사 주주로서의 권익 보호
2.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을 통한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3. 경영진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경영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② 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별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는 경우 제1항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중립 투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회사와 영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영 제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영 제8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 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회사가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 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총 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③ 회사가 영 제8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 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④ 제2항 전단의 규정은 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 또는 제5조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 방법)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통일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하여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주주총회 개최 파약)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는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에서 보유 중인 주식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보유 비중이 회사의 보유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의 경우는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결권 행사 권한)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의 책임하 결정한다.
- ② 중요한 사안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 ③ 회사는 필요시 외부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안건 분석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은 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 ④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 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에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자회사 리서치 센터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회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고객과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별첨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의결권의 행사)

스튜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법인 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1영업일 전까지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법인에 제출하거나 전자투표를 통해 행사한다.

제14조(기록·유지)

① 법 제87조 제7항 및 영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권행사 관련 사항의 공시)

①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기구 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영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영 제91조 제2항에 해당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회사가 본 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회사의 웹사이트에 최소 년 1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내용의 공개 시기)

의결권 행사 내용은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나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내부통제)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 칙 <2002.9.26>

이 지침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5.7>

이 지침은 200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4>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20>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4>

이 지침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15>

이 지침은 201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2.27>

이 지침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I. 재무제표 승인

I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반대한다.

I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서한,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 -3. 배당정책 공시

배당을 회사 성과 및 재무상황과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II. 정관 변경

II-1. 회사 명칭의 변경

회사명칭의 변경이 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II-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안에 대해 기존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거나 중대한 주주가치의 훼손이 없는 경우 찬성한다. 다만, 신규수익 창출 등 회사의 미래 전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II-3. 회계연도 변경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변경에 찬성한다.

II-4. 본사 이전

주주의 이익 훼손이 없는 경우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 기업인수 제안을 차단하려는 것이거나 주주이익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II-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II-6. 주주총회 소집

①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한다.

② 주총 소집지 또는 소집 일시의 변경의 경우 주주권리의 침해가 없는 합리적인 경우 찬성한다.

II-7. 의결주체의 변경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항으로서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II-8.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II-9. 의결권 대리 행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자의 자격을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주주이외의 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II-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 투표할 수 있다.

II-11. 이사회 규모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려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II-1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한다.
- ② 또한 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③ 이사회 및 위원회의 기능을 약화 시킬수 있는 소집통지 기한 단축 등의 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대한다

II-13. 사외이사의 비중 및 임기

- 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 ②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II-14.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분리

이사회 의장의 최고경영자(CEO)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II-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집중투표 무력화 또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시차임기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II-16.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17.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경영진에 대한 황금낙하산 계약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 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 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해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금낙하산 조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II-18. 배당

- ①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②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II-19.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이사·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②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안에 찬성한다.

II-20.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Ⅲ.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Ⅲ-1. 이사의 선임

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에 대해서 찬성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2) 이사회나 이사회회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다만, 임기중 이사회 출석율이 3/4 미만인 합리적인 사유를 적절히 소명한 경우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경우
 - 4)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5)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Ⅲ-2. 사외이사의 선임

사외이사 선임시 관련법령 및 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 1)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2) 경영·법률·회계·관련 산업 등 회사 경영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4)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자문계약 회사내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

Ⅲ-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Ⅲ-1. 이사의 선임 및 Ⅲ-2.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반대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 아닌 감사의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감사로서 장기 재임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거나 겸직으로 인해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Ⅲ-4. 임기 중 해임 제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없는 한, 임기만료 전 해임 안에 대해 반대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IV-1.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한다. 특히 적자 또는 순이익 감소 기업의 인당 및 총 보수한도 증액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② 감사의 보수 한도 수준이 감사가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할 유인을 훼손시킬 만큼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IV-2. 이사 및 경영진 보상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 경영진 보상체계에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IV-3. 퇴직보상

- ①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②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안에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V.주식매수선택권

V-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 ① 경영성과제고, 우수인력확보/유지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②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안에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④ 사외이사에게 급여 등 보상의 일부를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⑤ 총발행주식대비 주식매수선택권의 규모가 과도한 경우(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희석률이 과도한 경우(10% 이상 희석)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⑥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V-2. 주식보상제도

- ①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 한다.
- ② 주식보상제도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2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VI-1. 합병 및 분할합병

- ① 합병 및 인수, 분할합병안은 중장기 회사 및 주주가치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백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VI-2. 회사분할

회사분할에 대한 안은 분할방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경영자의 인센티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

VI-3.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장기적 측면에서 회사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하되, 종업원, 서플라이체인 상의 유관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VI-4. 자산의 매수 및 매각

자산 매수 안에 대해 매수가격, 공정성,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사업상 시너지,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

VI-5. 영업양수도 등

주주가치가 명백히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양수도에 대해 반대한다.

VI-6. 신주인수권

-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 및 제한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한다.

- ②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VII. 자본구조의 변경

VII-1. 자본의 감소

- 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다음의 경우 찬성 투표한다.
 - 1)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3)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 4)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을 목적으로 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② 그 외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회사 및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한다.

VII-2.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

- ① 발행주식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증가)하는 주식병합(주식분할) 안에 찬성한다.
- ② 주식분할 결과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을 위해 최대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경우 등 기존 주주에 해가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③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 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 한다.

VII-3. 자본의 증가

- ① 회사의 경영자들이 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 ②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많은 발행가능주식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두 배 이상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③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대비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VII-4. 신주 발행 및 자사주 매각

- ① 경영진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거나 보유중인 자사주를 매각하여 기업인수 시도에 대응하려는 경우, 중장기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한다.
- ② 신주를 제 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규모,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찬성한다

VII-5. 자기주식

- ① 자기주식 취득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찬성한다.
- ②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VIII. 기타 주주총회 목적사항

VIII-1. 지주회사의 설립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안은 설립목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

VIII-2.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상장폐지)

회사 주식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1)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 등 소액주주의 보호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 2)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3) 공개매수 가격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보상이 불합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Ⅷ-3. 종류주식

회사의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찬성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Ⅷ-4.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 찬성한다.

Ⅷ-5. 주주제안

- ① 주주제안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회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한다.
- ②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③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Ⅷ-6. ESG 이슈

- 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환경경영 목표의 수립·이행,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의 관리체계 강화 등 환경경영체계의 구축 또는 강화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②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회사의 장기적·안정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방안의 구축,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지원 등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 한다.

Ⅷ-7. 기타

상기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안건의 경우 수익자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중장기 관점에서 회사가치 및 주주권리의 제고를 우선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이 상 -